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처리요령

[시행 2025. 12. 09.] [사규 제25036호, 2025. 12. 09. 일부개정]

• 개정 2006-10-31

• 개정 2010-05-02

• 개정 2012-03-07

• 타사규개정 2013-10-31

• 개정 2014-01-13

• 개정 2016-06-10

• 개정 2016-09-23

• 개정 2018-09-05

• 개정 2018-09-05

• 개정 2022-10-05

• 개정 2025-12-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윤리경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윤리헌장·강령에 저촉되는 행위 (이하 "비윤리행위"라 한다)에 대한 신고의 의무·방법·절차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12.9.>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석유공사 소속 임직원(별정직 및 파견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외부 신고자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신고시에는 이 요령에 준하여 보호·보상한다. <개정 2022.10.5.>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3.>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삭제 2016.9.23.>
3. <삭제 2016.9.23.>
4. "내·외부 신고 "라 함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내외 비윤리행위를 인지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 윤리경영 핫라인 등을 통해 공사 임직원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5.>
5. "자율 신고"라 함은 공사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5.>
6. "윤리경영 핫라인"이라 함은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임직원이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2.10.5.>
7.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9.23.>

제4조(담당부서) ①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내・외부 신고사항 접수
2. 자율신고사항 접수
3.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②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내·외부 신고사항 접수
2. 자율신고사항 접수
3. 비윤리행위에 대한 감사, 점검 및 조사 등

③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담당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고 필요 시 그 조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5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9.>

제6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비윤리행위 신고하는 자는 내부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자율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전화, 방문 등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22.10.5.>

②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비윤리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제10조에서 정하는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

② 기타 신고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처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2.9.>

제7조의2(비윤리행위신고의 이송 등)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접수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2025.12.9.신설>

제7조의3(보호 보상제도 안내)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2025.12.9.신설>

제7조의4(신고의 취하)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비윤리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025.12.9.신설>

제7조의5(신고의 종결)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공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비윤리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비윤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025.12.9.신설>

제8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율신고 사항 및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5.2>
1.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3.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5.2>

제9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비윤리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부서는 경위를 파악 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및 제65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부정청탁의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5. 사무분장의 변경

⑧ 사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9조의2(보복행위 고발조치 등)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② 감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13.]

제9조의3(협조자 보호) 이 요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01.13.]

제10조(책임의 감면) ① 신고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비위가 발견되어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장은 그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의 감면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10.5.>

②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이 요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5.1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13>

③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대상) 비윤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16.9.23>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5.>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감사원·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 <개정 2010.5.2>
8.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

제15조(보상 심의) ① 윤리경영담당부서장 또는 감사담당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5>

1. 내·외부신고 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 수준

2. 신고된 금품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② <삭제 2018.9.5>

제16조 <삭제 2010.5.2>

제17조 (기타 세부사항) 이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2025.12.9. 개정>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 내·외부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유 형		보상금 지급액
금액산출이 가능한 건	보상가액(신고로 인하여 환수 등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된 금액)에 따라 구분 지급	• 1억원이하 :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 20억원초과 : 1억3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3%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원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하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상 지급사유 중복 시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별표2]

책임 감면 기준

구 분		요 건
책임면제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면제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감사담당부서가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3.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면제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감사담당부서가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3.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책임감경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3] (징계양정감면기준)적용	1. 비윤리적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2.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별지 제1호서식] <2025.12.9. 개정>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위반)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자율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200 . . .

신고자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2025.12.9. 개정>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2025.12.9. 개정>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비윤리행위자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 접수 · 처리 관련 안내

- 본 신고 건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 결과를 회신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안내

- 비윤리행위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이 누설된 경우 감사담당부서에서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관련 안내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감사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윤리행위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비윤리행위신고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는 전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신고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비위가 발견되어 신고자가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비윤리행위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유 형		보상금 지급액
금액산출이 가능한 건	보상가액(신고로 인하여 환수 등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된 금액)에 따라 구분 지급	•1억원이하 :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6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5% •20억원초과 : 1억3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3%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원